

창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00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1. 6. 25. 접수 제132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별지